

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

건의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	소관부처						
<p>1. 한강 친수구역 점용허가 규제 완화 (한강사업총괄부, '25.3.18.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강 유역에 편의시설 등 건립 전 환경부 사전허가 필요</li> <li>-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점용허가 득한 후 공사 가능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한강 지구 가운데 '친수지구'는 원칙상 체육·편의시설 건립이 가능한 구역이나, 하천점용허가에 있어 건립 불허가 결정이 나거나 검토 지연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 불확실성 상존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건의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지자체장이 '친수지구' 개발 시 환경부 사전허가를 받는 대신 '위임'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</li> <li>- 시·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국가하천기본계획 범위 안에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5조의2 신설 등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관련 규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하천법」 제25조(하천기본계획)</li> </ul>	<p>(환경부)</p>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0e0f0;"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현 행</th> <th style="width: 50%; text-align: center;">개 정 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~ ④ (생 략)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td> </tr> <tr> <td style="padding: 5px;">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</td> <td style="padding: 5px;">⑤ ----- ----- -----<u>미리 해당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(국가하천에 한정한다)</u>----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현 행	개 정 안	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~ ④ (생 략)	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	⑤ ----- ----- ----- <u>미리 해당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(국가하천에 한정한다)</u> -----
현 행	개 정 안							
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~ ④ (생 략)	제25조(하천기본계획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							
⑤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수자원관	⑤ ----- ----- ----- <u>미리 해당 시·도지사의 의견을 듣고(국가하천에 한정한다)</u> -----							

<b>건의제목</b> <b>(건의부서, 건의일자)</b>	<b>건의내용</b>	<b>소관부처</b>
	<p>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⑥ ~ ⑧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
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⑥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5조의2(친수지구에 관한 특례) ①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 친화적 활용을 위하여 해당 지구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.</p> <p>② 시·도지사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하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·변경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관할구역 내 시장·군수·구청장 의견 수렴</li> <li>2.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</li> <li>3. 공청회의 개최</li> <li>4.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</li> </ol> <p>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시기·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